(간편)급여인공관절치환수술특약 (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약 관 목 차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참조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2-1조의2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5조 사고증명서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8조의2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2-9조 특약의 소멸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11조 해약환급금

제5관 기타사항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부표2-1]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수술 분류표

(간편)급여인공관절치환수술특약 (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
- ※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특약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일반심사형의 경우: "(간편)" 부분이 없습니다.
- 일반형의 경우: "(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부분이 "(무배당)"으로 변경됩니다.
- ※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 모두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제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이 특약 "제1편 일반사항" 으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2-1조의2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수술"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이라 함은 <부표2-2>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수술항목이 급여항목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 환수술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 에서 관절을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 술, 외고정술 등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 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여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중 연간 1회에 한함)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 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이 특 약이 해당 약관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 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②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바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급여인공관절치환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심신상실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 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

제2-5조 사고증명서

- ① 제1-5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2호에서 말하는 이 특약의 사고증명서는 "사망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증명서, 진단서(병 명 및 분류코드 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이 특약은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 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 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감액 이후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감액처리에 대한 설명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감액전	감액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500만원
감액시점의 해약환급금	400만원	200만원
감액할 때 지급금액	200만원 (= 400	만원 - 200만원)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산출기초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

제2-8조의2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 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 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가 폐지되 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의 변경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 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할 경우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 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용, 보험료 변경내용, 특약내용 변경 절 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안내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의 이 특약의 계약 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②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특약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제2호 및 2항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 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11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1.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형"보다 낮은 보험료 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2. 이 특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고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고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이후 특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 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누계액^(주①) × "일반형"의 해약환급률^(주②)

(주)

- ① 납입보험료 누계액: 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납입하기로 한 특약 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감액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 x 보험료 납입 기간 x 12, 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일반형"의 해약환급률: "일반형"의 납입보험료 누계액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을 말하며, 소수점 4번째 자리 이하는 버림하고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4. 제2-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이 면제된 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3"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5. "1" 및 "3"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일반형"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 6. 회사는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일반형"과 비교·안내해 드립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부표1-1>"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